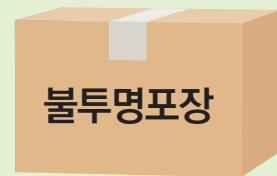




**농산물 출하 시
정보 표시는 의무입니다.**
(농산물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방법)

농산물을 포장하여 출하·판매하려면 포장재 겉면에 의무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. ("식품표시광고법", "원산지표시법")

- ✓ "식품등의 표시기준"(식약처 고시)에 따른 자연상태 식품 의무표시
- ✓ "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"에 따른 산지 표시



-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
-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
- 3 내용량
- 4 생산연도,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
- 5 산지(원산지표시법)



-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
 -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
 - 3 산지(원산지표시법)
- * 투명포장(진공포장 제외)은 내용량 생략 가능
** 투명포장 중 냉동·건조·염장·가열처리 하지 않은것은 날짜 표시 생략 가능

일반농산물 문의사항 :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☎ 1577-1255

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: ☎ 1588-8112

예시 일반농산물 의무표시 방법

* 표시방법은 포장재 인쇄, 스티커 또는 스탬프도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불투명 포장 표시사항			
품목	사과	생산자	사과작목반 홍길동 (054-***-****)
산지	국내산		
날짜 표시	내용량	5kg(13개)	

투명 포장	
품목	사과
생산자	사과작목반 (홍길동)
산지	국내산

* 날짜 표시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

* 투명 포장의 날짜 표시는 냉동·건조·염장 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

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·유통·판매하려면 포장재 겉면에 의무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.

- ✓ "농수산물품질관리법" 및 "농산물 표준규격"에 따라 의무표시
- * "표준규격품" 문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것은 농업인 자율임

"농산물 표준규격품"이란 표준규격(등급규격, 포장규격) 기준을 준수하고
포장재 겉면에 "표준규격품" 문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



의무표시

- 1 "표준규격품" 문구
- 2 품목
- 3 산지
- 4 품종
- 5 등급
- 6 내용량 또는 개수
-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
- 8 식품안전문구(세척 또는 가열)

표준규격품 문의사항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지원·사무소

예시 표준규격품 의무표시 방법

〈표준규격품은 불투명·투명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8가지 의무표시사항 기재〉

표준규격품			
품목	사과	생산자 (연락처)	사과작목반 홍길동 (054-***-****)
품종	부사		
등급	특상, 보통	내용량 (개수)	5kg(13개)
산지	국내산		
세척 후 드세요			
생산연도 2022년			

* 식약처 기준에 따라
날짜 표시는 생산연도,
생산연월일, 포장일 중
선택하여 표시

* 날짜 등의 표시 방법은 포장재 인쇄, 스티커, 스탬프도장 등을 활용할 수 있음